

4 재정운용계획

4-1. 중기지방재정계획

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충청북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.

※ 연도별 재정전망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8	2019	2020	2021	2022	합 계	연평균 증가율
세 입	4,999,286	5,253,173	5,483,741	5,695,315	5,866,625	27,298,140	4.10
자 체 수 입	1,115,186	1,139,585	1,166,974	1,194,588	1,223,970	5,840,303	2.40
이 전 수 입	2,719,723	2,906,347	3,095,896	3,259,539	3,413,125	15,394,630	5.80
지 방 채	63,000	70,000	75,000	80,000	50,000	338,000	△5.60
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1,101,377	1,137,241	1,145,871	1,161,188	1,179,530	5,725,207	1.70
세 출	4,999,286	5,253,173	5,483,741	5,695,315	5,866,625	27,298,140	4.10
경 상 지 출	1,110,277	1,127,815	1,143,717	1,147,508	1,130,270	5,659,587	0.40
사 업 수 요	3,889,009	4,125,358	4,340,024	4,547,807	4,736,355	21,638,553	5.10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(공기업, 기타), 기금

▶ 연평균 증가율 = $[(\text{최종연도}/\text{기준년도})^{1/(\text{전체연도 수} - 1)} - 1] \times 100$

4-2. 성인지 예산현황

■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■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북도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89	101,159
여성정책추진사업	10	7,169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46	37,000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33	56,990

▶ 2018년 당초예산 기준

◆ 보다 자세한 내용은 [별첨 4-2]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조하세요

■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■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3. 주민참여 예산현황

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충청북도는 모델 2안과 3안을 혼용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	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	모델
4,653,600	176,983	2~3안 준용

▶ 2018년 당초예산 기준

※ 표준모델

구분	모델안 1	모델안 2	모델안 3
총 칙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
운영계획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
위원회	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	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제12조(위원회 구성)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	제10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제13조(기능) 제14조(운영원칙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6조(회의 및 의결) 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제18조(해촉) 제19조(의견청취) 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 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 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
지 원 기 타 부 칙	제11조(시행규칙) 부 칙	제15조(시행규칙) 부 칙	제24조(시행규칙) 부 칙

◆ 보다 자세한 내용은 [별첨 4-3] 2018년도 주민참여 예산현황을 참조하세요

4-4. 성과계획서

-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북도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실국명	성과계획				예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 개수	지표수	단위 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
계	27	131	301	320	4,180,990	3,868,482	312,508
공보관	1	1	4	4	4,270	4,082	188
감사관	1	1	6	2	359	303	56
여성정책관	1	2	6	6	35,479	32,724	2,755
기획관리실	1	10	16	21	247,095	258,486	△11,391
재난안전실	1	8	16	18	167,742	162,983	4,759
행정국	1	7	32	27	598,224	511,895	86,330
보건복지국	1	9	13	19	1,490,547	1,306,163	184,384
경제통상국	1	16	25	30	135,567	148,082	△12,515
농정국	1	6	18	22	363,575	354,111	9,463
문화체육관광국	1	8	20	21	201,251	226,971	△25,720
균형건설국	1	8	17	22	223,254	181,544	41,710
바이오환경국	1	10	15	21	211,792	231,146	△19,354
소방본부	1	18	37	35	310,203	288,016	22,188
의회사무처	1	1	4	4	10,243	9,983	260
자치연수원	1	1	3	3	5,762	5,644	117
농업기술원	1	3	14	16	43,331	36,054	7,277
보건환경연구원	1	1	3	5	9,439	8,294	1,145
도로관리사업소	1	3	5	7	39,204	35,424	3,780
산림환경연구소	1	1	3	3	24,776	23,459	1,317
축산위생연구소	1	5	11	11	13,195	12,749	446
농산사업소	1	2	10	6	3,672	3,448	223
청남대관리사업소	1	1	2	4	10,911	8,643	2,268
내수면산업연구소	1	1	3	1	5,991	6,040	△49
서울세종본부	1	1	1	1	575	557	18
북부출장소	1	1	3	1	973	1,106	△133
남부출장소	1	2	3	2	4,141	4,569	△428
충북경제자유구역청	1	4	11	8	19,419	6,004	13,414

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
◆ 보다 자세한 내용은 [별첨 4-4] 2018년도 성과계획서를 참조하세요

4-5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32.35	46.79	35.34	27.15	60.01	11.63

- 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, 재정자립도·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(2013년 이전) 기준 금액
- ◆ 보다 자세한 내용은 [\[별첨 4-5\]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](#)를 참조하세요

4-6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안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(총액)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400	167	-
	부단체장		233	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1,477	1,472	△5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627	245	△77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	221	
	의원국외여비		84	
지방보조금		83,709	39,134	△44,575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1,254천원/1인	5,773	
공무원 일·숙직비		50천원/1인	1,091	

- ▶ 기관운영 업무추진비,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)'을 참조하세요(<http://lofin.mois.go.kr>)
- ☞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및 공무원 일·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있어, 기준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이는 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.
- ☞ 2018년부터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이 강화됨에 따라 총액배분 한도 내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, 지방의회관련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.